

의안번호	제 598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4월 20일 (제355회)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정책복지위원장
제안연월일	2017년 4월 20일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598
----------	-----

제안연월일 : 2017년 4월 20일

제안자 : 정책복지위원장

1. 주 문

- 1950년 7월 발생했던 충북 영동군 노근리 양민 학살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실시를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2001년 한·미 양국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노근리 희생자들의 억울한 희생이 밝혀졌고
- 이에 따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노근리 평화공원’ 이 조성되어 위령사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음.
- 노근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은 국민의 생명보호가 국가의 책무임을 확인하는 조치로, 잘못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특히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나서야 함.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노근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건의하고자 함.

붙임: 건의안

보낼곳: 대한민국 국회(원내교섭단체 대표), 행정자치부장관,
제19대 대통령 후보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

우리 충북의 가슴 아픈 역사인 영동군 노근리 양민 학살사건이 발생한지도 벌써 6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근리사건은 1950년 7월,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다수의 피난민들이 미군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건으로, 발생 후 십여 년 간 은폐되었다가 지금은 고인(故人)이 되신 정은용 씨를 비롯한 피해 유족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우리 충북도의회에서도 1999년 제6대 의회에서 노근리사건에 대한 한·미 양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충분한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었습니다.

이후 2001년 한·미 양국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노근리사건 희생자들이 철수 중이던 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됐음이 밝혀졌고, 또한 피난민의 이동 및 통제 업무를 한국경찰이 담당하도록 한·미 양국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이 노근리사건 발생 전 날 이미 영동군에서 철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사실도 확인 되었습니다.

정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억울한 피해를 인정하여, 2004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11년 ‘노근리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일부 의료지원금 제공과 위령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문제는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은 단지 금전적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전시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명백한 책무임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잘못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우리나라 근·현대사 전반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사건을 조사하고 그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실시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선례(先例)처럼, 노근리사건 역시 정부가 국민의 생명 보호를 등한시 했던 뼈아픈 역사적 오점을 정리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67년간 응어리진 한(恨)을 풀기 위해서는 배상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제 노근리사건은, 전쟁 상황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과 유족의 아픔을 기리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 우리 한반도에서의 반전(反戰)과 인권(人權), 그리고 평화(平和)의 시대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화합(和合)과 상생(相生)의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노근리사건의 생존 피해자는 4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80~90대의 노령(老齡)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을 위한 필수 과정인 배상 문제해결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노근리 희생자와 유족의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의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노근리사건 배상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라.

하나,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추가 조사를 위한 신고 상설화 제도를 마련하라.

2017. 4. 28.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